

# 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3월 16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누버거버먼이머징국공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[채권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6년 8월 25일

3. 정정 사유:

- 운용역 변경(차영상 운용역 → 박경세 운용역), 모두자신탁 운용역 변경
-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 방법 명확화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-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				
요약정보						
투자실적 추이	-	업데이트				
운용전문인력	차영상 운용역	박경세 운용역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추가)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변경시행일</th><th>변경 사항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2023.03.23</td><td>운용역 변경(차영상 운용역 → 박경세 운용역), 모두자신탁 운용역 변경</td></tr></tbody></table>	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2023.03.23	운용역 변경(차영상 운용역 → 박경세 운용역), 모두자신탁 운용역 변경
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				
2023.03.23	운용역 변경(차영상 운용역 → 박경세 운용역), 모두자신탁 운용역 변경					
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차영상 운용역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박경세 운용역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업데이트			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
	<p>다.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삼성누버거버먼이머징국공채플러스증권모투자 신탁[채권-재간접형] 차영상 운용역</p>	<p>다.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삼성누버거버먼이머징국공채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 박경세 운용역</p>												
9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<p>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7)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</p>	<p>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7)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 <b>업데이트</b></p>												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	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 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 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 가로 평가</p>	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(18 시)이내에 발행회사,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 권정보증개기관(불룸버그, 로이터 등) 등이 공고 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다. 다만,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 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 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</p>		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생 력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943 801 188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 액 포함) (추 가)</p> 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<p>(추 가)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li> <li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 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</li> </ul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 액 포함) (추 가)</p>	세액 공제	<p>(추 가)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li> <li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 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</li> </ul>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현행과 같음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33 943 1278 188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<p>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1,800만원</li> <li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 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 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</li> </ol> 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 득세 포함)</li> <li>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 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</li> <li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 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 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</li> </ol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1,800만원</li> <li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 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 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</li> </ol>	세액 공제	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 득세 포함)</li> <li>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 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</li> <li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 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 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</li> </ol>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 액 포함) (추 가)</p>													
세액 공제	<p>(추 가)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li> <li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 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</li> </ul>													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1,800만원</li> <li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 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 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</li> </ol>													
세액 공제	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 득세 포함)</li> <li>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 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</li> <li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 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 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</li> </ol>													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		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종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
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 득세액 X 70%' 적용		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 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 에 따른 세율 적용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 수세율의 70% 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외수령 원 천징수세율의 60%
분리과세 한도	연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 외, 퇴직소득 제외)		연금소득 분리과세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 금소득 2. 의료 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 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 능 (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)
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 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li> </ul>		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 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 양 필요 시</li> <li>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li>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 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li> </ul>
	<p>*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</p>		<p>(삭 제)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</p>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p>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<b>400만원</b>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<b>700만원</b>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 공제 (추가)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추가)</p>	<p>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<b>600만원</b>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<b>900만원</b>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<a href="https://100lifeplan.fss.or.kr">https://100lifeplan.fss.or.kr</a>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p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	가. 요약재무정보 (신설)	가. 요약재무정보 [기업공시서식개정 내용 반영] - 주식의 매매회전율 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